

# **크리원 (마포구 상수동 355-2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특별 및 일반임대

2021. 02. 08.

**크 리 원**

# 크리원 마포구상수동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55-2,3,262-7번지 (6호선 상수역 3번출구)
- ▶ 공급호수 68호 (특별공급 14호, 일반공급 54호)
- ▶ 단지명 크리원
- ▶ 사업시행자 (주)무궁화신탁
- ▶ 시공사 (주)도림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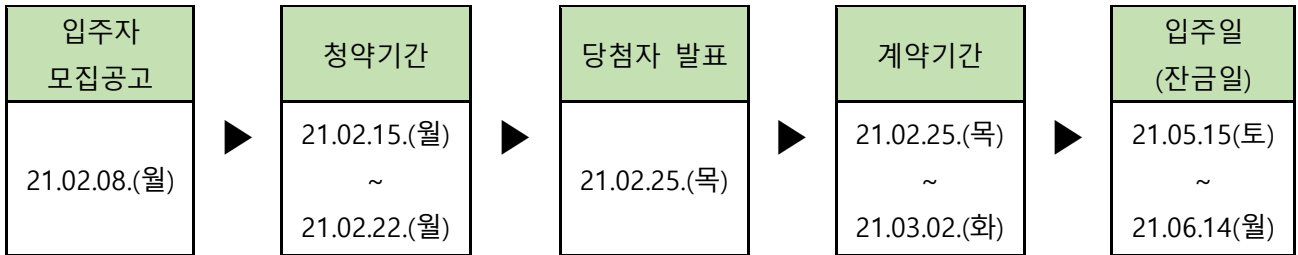
- 이 주택은 크리원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크리원”이고, 계약자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나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 예정입니다.
- 마포구 상수동 355-2외 2필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금융권에서 토지를 담보(사업비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 비를 조달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3, 제17조의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6조,제17조 등에 의거하여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주택공급신청자(이하‘신청자’라 함)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이하)는 예외임
- 입주신청은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사유로 신청하신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입주청약)은 PC·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처 : [www.creaone.kr](http://www.creaone.kr))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1. 02. 0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크리원 청년주택 입주지원센터 (02-3144-3309)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합니다.

※ 서울특별시의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임차보증금 50% 무이자지원) 및 청년월세지원(월20만원,최대10개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별도로 서울특별시(다산콜센터 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신호주택부 콜센터 1600-3456)에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 1.공급일정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 2.신청방법 및 문의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홈페이지와 입주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홈페이지([www.creaone.kr](http://www.creaone.kr))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크리원' 검색)

■ 인터넷 신청 : 크리원 홈페이지 ( [www.creaone.kr](http://www.creaone.kr) )

※ 인터넷 신청은 jpg(사진)사본파일로 제출하며, 입주자 당첨후 임대차 계약시에는 원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 문의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토정로 131 크리원 입주자 상담센터

전화 02-3144-3309 (10:00~17:00/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이메일 [info@creaone.kr](mailto:info@creaone.kr)

### 3.공급현황

#### ■ 공급주택 유형(최고층수: 15층, 개별난방)

구분	공급유형	세대수(호)	세대당계약면적(m <sup>2</sup> )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계약면적	
특별	청년	17	8	16.90	6.99	23.89	27.55
		19	2	18.83	7.79	26.62	30.70
	신혼	30	2	30.07	12.43	42.50	49.02
		31	2	30.81	12.74	43.55	50.22
소계		14	-	-	-	-	
일반	청년	17	32	16.90	6.99	23.89	27.55
		19	7	18.83	7.79	26.62	30.70
	신혼	30	7	30.07	12.43	42.05	49.02
		31	8	30.81	12.74	43.55	50.22
소계		54	-	-	-	-	
합계		68	-	-	-	-	

#### ■ 임대금액

##### ◆ 특별공급(청년/대학생)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세대수 (호)	보증금 10%		보증금 20%		보증금 3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7	8	1,700	60	3,400	53	5,100	47
19	2	1,800	63	3,600	56	5,400	49

##### ◆ 특별공급(신혼부부)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세대수 (호)	보증금 10%		보증금 20%		보증금 4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30	2	2,700	83	5,400	74	10,800	55
31	2						

◆ 일반공급(청년/대학생)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세대수 (호)	보증금 10%		보증금 20%		보증금 3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7	32	2,000	71	4,000	63	6,100	56
19	7	2,100	75	4,200	66	6,400	58

◆ 일반공급(신혼부부)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세대수 (호)	보증금 10%		보증금 20%		보증금 4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30	7	3,200	99	6,400	88	12,900	66
31	8						

※ 전월세 전환율 : 전월세전환율은 주변시세 산정 시 전환율을 적용한다.

월세 전환율 : 30, 31형은 4.1%, 17, 19형은 4.7%적용)

■ 임대금액 설명 및 임대보증금 지원

- 개인별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시 임대보증금의 90%를 연 1.0% 대출지원 또는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지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청신호 주택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출구에서 지하로 바로 연결)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주변시세 조사결과에 따른 m<sup>2</sup>당 책정된 것이며, 공용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10%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 전환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입주 전에 선택한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비율)은 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 불가능합니다.  
(월세전환율 : 30, 31형은 4.1%, 17, 19형은 4.7%적용)
- 임대보증금은 입주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지연시 연체료가 발생하고, 입주지정일까지 미납시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입주 시기는 2021.05.15(토) ~ 2021.6.14(월) 중 선택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완공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개별통보)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며, 월 임대료는 후불이고, 납부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 당첨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는 임대사업자가 수행합니다

## 4.임차인 모집요건

### 가. 특별공급 대상자

####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2.8)기준 해당공급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 (외국인 제외)

- 만19세이상부터 만39세이하
- 미혼(청년.대학생 공급분) or 신혼(예비)부부(신혼부부 공급분)
- 무주택자
- 자동차 무소유 및 미운행자 (예외차량 : 장애인등록차량, 생업용차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 세대기준 월 평균 소득 3,174,176원 이하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경우 아래 표 참고) 신청인이 소득이 <b>있는</b>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신청인이 소득이 <b>없는</b> 경우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
- 본인 자산 가액 2억3,700만원 이하

※ 신청 연령은 출생년도 1981년 모집공고 월일부터 출생년도 2002년 모집공고 월 직전일까지 입니다.

※ 예외차량은 아래 6. 차량등록기준 및 기타 제출서류 참고

※ 아래 표: 세대기준 월평균 소득(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원)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 6인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 합산하여 산정

(6인가구) : 7,594,083원, (7인가구) : 8,248,981원

#### ■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 순위 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 변경은 불가)

1. 소득 기준 :
1순위 - 기준 소득의 100%이하 (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2,645,147원 이하 )
2순위 - 기준 소득의 110%이하 (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2,909,662원 이하 )
3순위 - 기준 소득의 120%이하 (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3,174,176원 이하 )
2. 지역 기준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거주자, 재학자, 입(복)학 예정자, 재직자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3순위 - 그 외 지역

※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서 : 소득순위 →지역순위 →추첨

■ 특별공급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유의사항
1. 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함)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 24(인터넷)	주민등록등본은 모집공고일 이전 전입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세부내역 포함) (서울시내역 1부, 전국내역 1부)			구청, 시청	반드시 구청(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소 득 자 료 (세대 or 부모)	5.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24(인터넷)	
	6	무소득자	납세사실확인증명서	세무서 홈텍스(인터넷)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근로자외 (사업자등)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자 산 자 료(본인)	7.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본인명의(금융, 주식) 조회 후 각 합계 작성		금융결제원(인터넷)	추후 계약시 사실 확인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신청인	

※ 소득자료 유의사항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기준)" 서류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서류

- 홈페이지 제출 : [www.creaone.kr](http://www.creaone.kr) (인터넷 청약 제출)
- 제출 일자: 2021년 2월 15일 (월) ~ 2021년 2월 22일 (월) 까지
- 인터넷 제출 서류 : 해당 서류를 jpg(사진) 으로 첨부  
제출서류(사본)는 계약 시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 시 본인 기준으로 모집 공고일부터 발행된,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상세 증명서입니다.
- 인터넷 발급 제출이 불가한 서류가 있는 바, 우선 구청(시청)에서 발급하면 신청이 용이합니다.
- 정부24 [www.gov.kr](http://www.gov.kr) /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http://www.payinfo.or.kr)

## 나. 일반공급 대상자(청년. 대학생 및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2.8)기준 해당공급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 (외국인 제외)

### ◆ 청년. 대학생 일반공급 신청자격

-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 미혼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자동차 무소유 및 미운행자  
(예외 차량 : 장애인등록차량, 생업용차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 ◆ (예비)신혼부부 일반공급 신청자격

-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 혼인 합산기간이 총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으로 해당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자산요건은 자동차 무소유 및 미운행자 이외 없음  
(예외 차량 : 장애인등록차량, 생업용차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 신청 연령은 출생년도 1981년 모집 공고 월 일부터 출생년도 2002년 모집공고 월 직전 일까지입니다.

※ 예외차량은 아래 6. 차량등록기준 및 기타 제출서류 참고 .

### ◆ 일반공급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유의사항
1. 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 24(인터넷)	주민등록등본은 모집공고일 이전 전입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세부내역 포함) (서울시내역 1부, 전국내역 1부)	주민센터, 시청, (인터넷 발급 불가)	반드시 구청(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신혼부부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홈페이지 제출 : [www.creaone.kr](http://www.creaone.kr) (인터넷 청약 제출)
- 제출 일자: 2021년 2월 15일 (월) ~ 2021년 2월 22일 (월) 까지
- 인터넷 제출 서류 : 해당 서류를 jpg(사진) 으로 첨부  
제출서류(사본)는 계약시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 시 본인 기준으로 모집 공고일부터 발행된,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상세 증명서입니다.
- 인터넷 발급 제출이 불가한 서류가 있는 바, 우선 구청(시청)에서 발급하면 신청이 용이합니다.
- 정부24 [www.gov.kr](http://www.gov.kr) /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http://www.payinfo.or.kr)



## 5. 입주신청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에 관하여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li> <li>- 신청자격요건은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적발 시 주의조치후 계약해지됩니다.</li> <li>-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즉시 계약 해지됩니다.</li> <li>- 신청인 본인만이 입주가 가능하며 전대 적발 시 계약이 해지됩니다.</li> <li>※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li> </ul>
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신청서류는 jpg파일(사본)을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계약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 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신청마감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 이후 연락이 안되거나, 당첨을 포기하실 경우 다음 예비입주자로 넘어갑니다.</li> <li>- 당첨 이후 계약 기간을 넘기면 자동 당첨 취소 처리됩니다.</li> <li>- 계약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임대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li> <li>-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사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팜플렛 등 각종 안내문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 6. 차량등록 기준 및 기타 제출서류(해당자)

### 가. 차량등록 기준

차 종		운영 방식	운영 기준
장애인		-	<b>차량가액 2,468만원 이내</b>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유자녀		-	<b>차량가액 2,468만원 이내</b> - 만6세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생 업 용	승용차	승용차에 기구나 기계를 싣고다니는경우	<b>차량가액 2,468만원 이내</b> - 해당차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년주택센터에서 정기 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시 자료를 제출하여 생계형임을 증명 하여야하는 입증의 책임이 있으며, - 비생계형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포함)이 생겼을경우 센터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하는 통지의무가 있음.  이를 어겼을경우 퇴거 및 계약연장불가
	택시, 화물차, 택배, 탑차 등	택시, 화물운송, 택배, 푸드트럭 등	<b>차량가액 한도 없음</b>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기계식)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면적등)에 따라 운행 가능
	이륜차 (125CC이하)	택배 및 배달용 (필수 주차장 수량과 무관)	<b>차량가액 한도 없음</b>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여 주차장형태와 규모에따라 운행가능

### 나. 용도별 증빙서류

차 종		증빙 서류
장애인, 유자녀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유자녀: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생 업 용	승용차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택시, 화물차, 택배, 탑차 등	
	이륜차 (125CC이하)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입금확인서,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 다. 주차장은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 7.호수추첨 및 당첨자 발표

### ■ 호수추첨

- 주택의 호수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합니다.
- 호수추첨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호수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호수교환도 불가능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이때 예비자 공급은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사업주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1. 2. 25.(목)

■ 당첨확인 : 크리원 홈페이지 ( [www.creaone.kr](http://www.creaone.kr) ) 및 문자 개별 발송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 및 연락처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 당첨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크리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 8.계약일시, 장소 및 구비서류

- 방문 계약 일시 : 2021.2.25(목) ~ 3.02(화) 10:00 ~ 17:00 (일요일휴무/점심시간 12:00 ~ 13:00)
- 방문 계약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55-2 (자세한 일정은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여 방문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및 준비물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본인도장(본인서명가능) ③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④ 제출 서류 원본 ⑤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등 (이동식저장 USB):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자산 조회 및 성범죄 이력 확인용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직계가족 포함

※ 소득, 자산(금융자산포함)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

## 9.단지내 유의사항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상수역 3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 6호선 역세권으로 합정동, 신촌 유수의 대학가와, 여의도 금융가, 영등포 등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대중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지하1, 2층과 지상1층에는 카페, 편의점,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입주 예정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높습니다.
- 근방에 여개의 버스 노선도와 단지 인근에 있는 강변북로가 자리하여 교통이 용이합니다.

### ■ 주택 환경

-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를 나눔카 (카셰어링)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주택공급신청자(이하'신청자'라 함)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자동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 사용)와 생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하)는 예외임)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는 불박이장,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배치되어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외관,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 (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호수에 따라 전자 팸플릿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 (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 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부대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 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보관소(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및 해충, 소음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빨래건조 등)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 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세대별 입주 청소는 운영사가 일괄 진행하고 세대 입주자 퇴거 시 청소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단, 이후 입주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직접 청소를 할 수 있으며 퇴거 시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 주택 내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반려동물 출입이 적발되는 경우 주의조치 후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 부대시설 환경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에는 고급스러운 호텔식 라운지와 건조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1, 2층,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공시설에는 소음, 진동 및 다중의 집객으로 인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관리 등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주택법」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3항에 의거하여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정식 임차인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모임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을 위한 일부 주거서비스의 경우 단지 내 공용부분을 사용하여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등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함)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함)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